



# 인천공항세관



수신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장 귀하  
(경유)

제목 도자제품의 원산지 표시 유의사항 안내

1.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4.6.1부터 수입신고되는 도자제품(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별표 2의 181, 182, 183번 물품)에 대하여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(날인, 라벨, 스티커, 꼬리표 부착)을 배제하고 원칙적인 방법\*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.

\* 인쇄, 등사, 낙인, 주소, 식각,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

3. 그러나 개정된 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를 잘못 이해하여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사오니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화주 및 관세사 등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인천공항세관장



관세행정관 강윤창      관세행정관 서정년      통관지원과장 전결 2015. 5. 15. 장용요

협조자

시행 통관지원과-4193      (2015. 5. 15.)      접수

우 400-722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193-70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/ www.customs.go.kr/airport

전화번호 032-722-4122      팩스번호 032-722-4119      / behkyc@customs.go.kr      / 대국민 공개

한국관세사회  
인천공항지부

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전회원 이침통보함

